차량유지비 세무조정 ⦁간주업무사용비율：25%\* \* 1천5백만원(15,000,000) / 총비용(60,000,000) ⦁차량관련 유지비 손금 부인액 15,000,000원\* 손금불산입(상여) \* 총 유지비(20,000,000)－[총 유지비(20,000,000)×간주업무사용비율(25%)]